

# 서울특별시 마포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4. 4. 16.  
행정건설위원회

## 1. 심사경과

-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4. 4. 2. 고병준 의원 외 6
- 나. 회부일자: 2024. 4. 3.
- 다. 상정일자: 제267회 임시회 제1차 행정건설위원회(2024.4.15.)  
상정, 심사, 의결

## 2. 제안설명요지 【제안설명자: 고병준 의원】

### 가. 제안이유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구체적인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어린이 통학로 내에 정보통신기술 등을 활용한 보행안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어린이 보행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임.

### 나. 주요내용

- 1) 어린이 교통안전 개선 및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 의무화 (안 제3조)
- 2) 어린이 통학로 개선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4조)
- 3) 정보통신기술 등을 활용한 보행안전시설 설치(안 제7조)
- 4) 기타 조문 정비(안 제1조, 제11조)

다. 참고사항

-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12조, 「교통안전법」 제17조, 제18조
- 입법예고: 2024. 3. 27. ~ 4. 2. 결과: 의견 없음
- 예산조치: 비용추계서 미첨부

3. 검토보고(전문위원 유준상)

- 본 조례안은 고병준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6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하여 행정 건설위원회로 회부된 조례안으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구체적인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어린이 통학로 내에 정보통신기술 등을 활용한 보행안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어린이 보행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임.

가. 개정 취지(적정성/타당성)

- 본 조례안은 어린이 교통안전 보호를 위해 「도로교통법」 제12조에 따라 지정·운영되고 있는 어린이 보호구역 등에 스마트폰 사용제한 서비스 도입 등 보행안전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마포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됨.

나. 어린이 관련 교통사고 현황

<12세 이하 어린이 교통사고 추세>

(단위 : 건, 명, %)

구분	전체교통사고			어린이 교통사고							어린이 추계 인구
	사고건수	사망자수	부상자수	사고건수		사망자수			부상자수		
				(건)	점유율	(명)	점유율	어린이인구 10만명당	(명)	점유율	
2018	217,148	3,781	323,037	10,009	4.6	34	0.9	0.6	12,543	3.9	5,679,406
2019	229,600	3,349	341,712	11,054	4.8	28	0.8	0.5	14,115	4.1	5,566,149
2020	209,654	3,081	306,194	8,400	4.0	24	0.8	0.4	10,500	3.4	5,417,187
2021	203,130	2,916	291,608	8,889	4.4	23	0.8	0.4	10,978	3.8	5,224,284
2022	196,836	2,735	281,803	9,163	4.7	18	0.7	0.4	11,389	4.0	5,008,410
연평균 증감률	-1.9	-8.2	-2.7	-3.5	-	-19.7	-	-	-3.2	-	-2.8

<출처 : 도로교통공단 2022년 어린이 교통사고 특성분석>

<최근 5년간 서울특별시 어린이 관련 교통사고 현황><sup>1)</sup>

(단위 : 건)

구분	지역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비율
어린이 관련 교통사고	서울시	1,331	1,475	928	1,026	1,164	100.0%
	마포구	45	45	34	30	36	3.1%
	강남구	86	107	76	81	111	

<출처 : 교통사고분석시스템>

- (마포구) 서울시 관내 사고 중 3.1%(25개 자치구 중 16번째)
- (강남구) 서울시 관내 사고 중 9.5%로 1위. 어린이 교통사고예방을 위해 강남구는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를 2023년 개정함

<최근 5년간 서울특별시 어린이보호구역내 어린이 교통사고 현황>

연도	사고 건수 (건)	사망자수 (명)	부상자수 (명)	사고유형(건수)				
				횡단중	차도 통행중	길가장 자리 구역	보도 통행중	기타
2018	77	1	77	43	7	2	4	21
2019	114	2	115	53	8	2	2	49
2020	65	-	70	19	1	2	1	42
2021	68	1	83	26	5	-	2	35
2022	77	1	78	29	5	1	4	19

<출처 : 교통사고분석시스템>

다. 조항별 구성 및 내용

- 안 제3조에는 어린이 교통안전 개선 및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구청장 책무 의무화 내용으로 기존 권고 조항을 의무조항으로 개정하여 구청장의 책무를 강화하는 내용임.

1) 별표 1 서울특별시 자치구별 어린이 교통사고 현황 참조

- 안 제4조에는 어린이 통학로 개선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25개 자치구 중 13개가 지역교통 안전기본 계획 및 시행계획에 어린이 통학로 안전을 위한 필요사항을 담도록 명시되어있는 부분을 마포구도 개정 신설하는 내용임.
- 안 제7조에는 정보통신기술 등을 활용한 보행안전시설을 설치하는 내용임.
- 안 제1조, 제11조에는 기타 조문을 정비하는 내용임.

## 라. 종합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구청장으로 하여금 「교통안전법」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른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 및 지역교통안전시행계획을 수립하는 때에 어린이 통학로 안전을 위한 필요 사항을 담도록 명시함에 따라 최근 5년간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건수는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이고 마포구는 타 자치구 대비 어린이 교통사고 비율이 낮은 편이나 횡단중 사고 비율은 여전히 높은 수준으로 어린이보호구역과 통학로 등 어린이 횡단 중 사고 감소를 위한 지속적인 안전시설투자가 필요하다 할 것이고, 사고 예방을 위한 ‘선제 대응’이 필요함.
- 따라서 어린이들이 교육시설(학교)에서 집까지 주로 이동하는 ‘통학로’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교통사고 예방정책을 강화하도록 함으로써 보행로 통행시 ‘정보통신기술 등을 활용한 보행안전시설’을 추가해 스마트폰 차단 기능 등 보행안전시설을 도입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 교육시설 주변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교통사고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고자 하는 본 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됨.으로써 상위법령과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본 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 또한, 학생 안전과 학교 교육에 관련한 기관협력체계를 유지하여 시설 장치에만 의존하지 말고 교육과정에서 교통 기본 질서 교육을 통한 소양지식 교육을 지속적으로 병행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없음
6. 심사결과: 원안가결
7. 기타 소수의견의 요지: 없음
8. 기타: 없음

[별표 1] 서울특별시 자치구별 어린이 교통사고 현황

연번	자치구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비율*
1	강 남 구	86	107	76	81	111	9.5%
2	송 파 구	110	136	88	88	99	8.5%
3	서 초 구	77	69	43	55	65	5.6%
4	노 원 구	73	74	54	55	64	5.5%
5	강 서 구	64	90	43	58	63	5.4%
6	양 천 구	72	81	47	68	60	5.2%
7	강 동 구	58	69	40	40	53	4.6%
8	구 로 구	63	81	32	33	50	4.3%
9	서 대 문 구	32	43	36	28	49	4.2%
10	강 북 구	42	59	33	25	47	4.0%
11	중 랑 구	68	65	62	37	46	4.0%
12	성 북 구	64	59	32	44	45	3.9%
13	은 평 구	56	55	36	49	45	3.9%
14	영 등 포 구	85	74	50	79	39	3.4%
15	동 대 문 구	42	41	31	26	38	3.3%
16	마 포 구	45	45	34	30	36	3.1%
17	동 작 구	43	57	24	37	35	3.0%
18	종 로 구	28	20	16	15	34	2.9%
19	광 진 구	43	45	22	39	32	2.7%
20	용 산 구	34	27	24	18	30	2.6%
21	도 봉 구	34	42	19	20	27	2.3%
22	금 천 구	26	30	20	27	27	2.3%
23	성 동 구	28	45	18	21	24	2.1%
24	관 악 구	35	37	34	32	23	2.0%
25	중 구	23	24	14	21	22	1.9%
합계		1,331	1,475	928	1,026	1,164	100.0%

## [별표 1] 관계 법령

### 「도로교통법」

[시행 2024. 1. 1.] [법률 제19357호, 2023. 4. 18., 일부개정]

**제12조(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해제 및 관리)** ① 시장등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이나 장소의 주변도로 가운데 일정 구간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자동차등과 노면전차의 통행속도를 시속 3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1. 28., 2014. 11. 19., 2015. 7. 24., 2017. 7. 26., 2018. 3. 27., 2021. 10. 19., 2023. 4. 18.>

1.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 「초·중등교육법」 제38조 및 제55조에 따른 초등학교 또는 특수학교
2.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 가운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어린이집
3.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학원 가운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학원
4.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2 또는 제60조의3에 따른 외국인학교 또는 대안학교,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대안교육기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23조에 따른 국제학교 및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외국교육기관 중 유치원·초등학교 교과과정이 있는 학교
5. 그 밖에 어린이가 자주 왕래하는 곳으로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 또는 장소

② 제1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해제 절차 및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 행정안전부 및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23. 4. 18.>

③ 차마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7.>

④ 시·도경찰청장, 경찰서장 또는 시장등은 제3항을 위반하는 행위 등의 단속을 위하여 어린이 보호구역의 도로 중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곳에 우선적으로 제4조의2에 따른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신설 2019. 12. 24., 2020. 12. 22.>

⑤ 시장등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어린이 보호구역에 어린이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 또는 장비를 우선적으로 설치하거나 관할 도로관리청에 해

당 시설 또는 장비의 설치를 요청하여야 한다. <신설 2019. 12. 24., 2023. 4. 18.>

1.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시설의 주 출입문과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간선도로상 횡단보도의 신호기
2. 속도 제한, 횡단보도, 기점(起點) 및 종점(終點)에 관한 안전표지
3. 「도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로의 부속물 중 과속방지시설 및 차마의 미끄럼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
4. 그 밖에 교육부, 행정안전부 및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장비

[전문개정 2011. 6. 8.]

[제목개정 2023. 4. 18.]

## 「교통안전법」

[시행 2024. 2. 17.] [법률 제19673호, 2023. 8. 16., 일부개정]

**제17조(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 ①시·도지사는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에 따라 시·도의 교통안전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시·도교통안전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하며, 시장·군수·구청장은 시·도교통안전기본계획에 따라 시·군·구의 교통안전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시·군·구교통안전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②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시·도교통안전기본계획 또는 시·군·구교통안전기본계획(이하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이라 한다)의 수립에 관한 지침을 작성하여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7. 1. 17.>

③시·도지사가 시·도교통안전기본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지방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확정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시·군·구교통안전기본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시·군·구교통안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확정한다. <개정 2012. 6. 1.>

④시·도지사는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도교통안전기본계획을 확정할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한 후 이를 공고하여야 하며,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군·구교통안전기본계획을 확정할 때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한 후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⑤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은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의 변경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20. 6. 9.>

⑥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등



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 6. 9.>

**제18조(지역교통안전시행계획)** ①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소관 지역 교통안전기본계획을 집행하기 위하여 시·도교통안전시행계획과 시·군·구교통 안전시행계획(이하 “지역교통안전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시·도지사는 시·도교통안전시행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한 후 이를 공고하여야 하며, 시장·군수·구청장은 시·군·구교통안전시행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한 후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③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역교통안전시행계획의 수립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